

[미래당(우리미래) : 뉴스타과 답변]

1.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2만 2천 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건수늘리기용 법안이 늘어나면서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법공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적정 수의 내실있는 법안 발의가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유럽의 경우처럼 입법발의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의원의 입법책임강화를 위한 정당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함.

2. 발의법안 건수가 늘어나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되는 법안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자동 상정은 상임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도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패스트트랙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화 효율성을 높여야 함. 20대 국회 입법처리율이 34%에 불과함.

3. 20대 국회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법안심사 소위 월 2회 정례화와 폐회 중 상임위 개회를 명시하였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원 또는 정당에 벌칙(수당 등에 대한 페널티)을 강제하는 방식의 국회법 개정 찬성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함. 특히 수당과 연계해야 함.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의권 등이 보장되어야 함.

4. 국회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관행상 합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더라도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숙의과정을 거치되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국회표결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기된 기본사항이기에 마땅히 보호/보장되어야 함.

5.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인해 법안처리 지연과 ‘월권’ 등 수 십년째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원/보완도 가능함. 옥상옥의

불필요성이 많은 구조임.

6.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불법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통해 다루도록 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적이 없어 동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록 공개 또는 독립적인 윤리심사위 구성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국회 윤리위를 국회의원이 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과 실행력이 없는 보여주기식 제도임.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는 필요함.

7. 영국에서와 같이 외부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 보수를 결정하고 의원 수당과 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0) ② 아니오 () ③ 기타 ()

▶ 영국의 의회독립윤리국(IPSA)처럼 반드시 ‘독립기구’가 도입되어야 함.